

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(검사 등) 및 제44조(과태료)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. 07. 26.

서 대 문 구 청 장

- 공고기간 : 2024. 7. 26. ~ 2024. 8. 9.
- 공고대상

건설기계 등록번호	소유자	주소	검사유효기간	비고 (반송사유)
서울22-8109	정*훈	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상촌길 **-**, ****	2020. 11. 18. ~ 2023. 11. 17.	수취인불명

- 공고내용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반송분 공고
- 법적근거 :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13조 및 제44조
- 납부방법 : 서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 또는 인터넷(서울시 ETAX)으로 입금
- 문의사항 :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☎ 02-330-8682

※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(납기경과 시 3% 납기경과 후 60개월까지 월 1.2%) 「지방세징수법」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.